

제29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의 회 사 무 국
위 원 회 제 안

# 구미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제안연월일	2026. 3. 17.
제 안 자	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# 구미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	
번호	

제안연월일 : 2026. 3. 17.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## 1. 제안이유

현행 규칙상 배지 재교부 신청 시 신청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규정은 현재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배지 재교부 신청 시 신청자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, 기타 운영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·보완함으로써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배지 교부(제9조)

- 배지 재교부 신청 시 신청자 비용 부담 내용 삭제

나. 별지 제1호서식 배지발급대장 수정

## 3. 개정규칙안 : 붙임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해당사항 없음

나. 기 타: 해당사항 없음

다.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없음

## 구미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구미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9조제1항 중 “의장이”를 “의원별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의장에게 제출”을 “제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의원은 교부받은 배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■ [별지 제1호서식] 배지발급대장

의원명	(재)교부		수불현황			결재(전결)	
	일자	사유	수입	수불	잔량	담당자	의정팀장

